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2022. 12. 8.)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국 모

###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2-139
- 나. 제 안 자: 남해석 의원 외 12명
- 다. 제안일자: 2022년 11월 22일(화)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2년 11월 25일(금)

### 2. 제안사유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 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품권의 구매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상품권 운영 자금의 보유·관리 현황 공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 나. 이자수익 처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의3)
- 다.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및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조항 신설(안 제7조의2)

## 4. 관계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 관리) 및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 5. 검토보고

- 동 조례 개정안은 2022년 11월 22일 남해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어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개정안은 갈수록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그 효율성이 입증되고 있는<sup>1)</sup> 지역 사랑 상품권 운영자금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해 운영·관리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상품권의 구매·이용시 장애인, 노년층 등 정보취약계층<sup>2)</sup>이 차별받지 않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추가하고 있음.
- 개정안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제3조의2에 2항을 신설하여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음. 올해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개정된 조례에는 운영자금을 구 금고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자금 운영의 주체를 명확히 하였으나 운영 현황 공개 부분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음.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포함토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임.
- 또한, 제3조의3을 신설하여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구의 재정으로 귀속함을 명시함.

---

1) 2021년 7월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서울시 주관 여론조사에 따르면, 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40.6%), 소상공인 보호(21.2%), 가계지출부담 완화(20.1%), 전통시장 활성화(16.5%)에 유용하다고 응답하여 정책적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되고 있음.

2) 정보취약계층: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

- 그리고, 상품권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이와 더불어 정보취약계층이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으며(안 제7조의2), 이는 그동안 장애인, 노년층 등이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의 구매와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에서도 각종 정보 접근에 있어 특별한 사유 없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노년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책무4)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이러한 조례의 개정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정보취약계층 또는 디지털 약자가 손쉽게 마포사랑 상품권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 마포사랑상품권 발행규모 및 예산

발행년도	발행규모 (억원)	발행회차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1,660	11회	18,053,084	2,765,198	9,937,886	5,350,000
2020년	300	4회	3,418,729	0	2,068,729	1,350,000
2021년	500	4회	5,362,355	1,197,198	3,165,157	1,000,000
2022년	860	3회	9,272,000	1,568,000	4,704,000	3,000,000

- 사업 추진 비용 및 마포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및 발행수수료 지급
- 2022년 현재 할인보전금 매칭 비율 (국비:시비:구비=2:6:2)
- 2022년부터 마포사랑 상품권 발행수수료 자치구 부담